

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(제9조제2항 관련)

1. 상담실 및 사무공간을 갖출 것
  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
  - 가. 변리사, 기술사 또는 기술거래사 자격이 있는 사람
  - 나. 이학, 공학 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
  - 다.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
  - 라.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
  - 마. 그 밖에 특허청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